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9,458,718	21,583,762
일반회계	640,901,079	19,227,032
특별회계	78,557,639	2,356,729
공기업특별회계	67,133,165	2,013,995
상수도공기업	37,548,685	1,126,461
하수도공기업	29,584,480	887,534
기타특별회계	11,424,474	342,734
의료급여기금운영	1,031,944	30,95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39,228	19,1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5,271	4,058
공영개발사업	407,412	12,222
농공지구조성사업	5,201,639	156,049
수질개선	541,015	16,230
주택사업	3,081,953	92,459
기반시설	22,612	678
장기미집행	363,400	10,9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63,81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1회계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22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